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3. 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I. 사업개요	1
II.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3
1. 지원자격 및 요건	3
2. 선발절차	6
3. 사업신청	7
4. 사업대상자 선정	9
III.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1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11
2.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6
3.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6
IV.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7
1. 용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17
2. 용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22
V.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24
1. 기관별 역할	24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25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28
VI. 기타 행정사항	30
< 부록(별표·별지) >	33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대출취급기관(농협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정부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유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실행 포함)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수령 후 거치·상환기간 동안은 본인의 영농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대출취급기관 등 포함)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시설 등) 매각, 사업 포기,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20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I.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추진 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유의사항]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 후 선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지침에 따르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2. 관련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3.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	'22	'23.11월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93.7	94.7	92.7	93.6	12월말	(당해 연도 후계농의 영농 종사 인원 / 당해 연도 후계농 선발인원) x 100

* 최근 3개년 영농정착률 및 정책적 의지를 고려하여 목표치 수립

4. 연도별 선정인원 및 재정투입 실적 등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21년(누적)	2022년	2023년 11월 기준	2024년
선정인원	154,757	3,100	5,100	6,100
정책자금(용자)	4,063,742	375,000	800,000p	800,000p

II. 20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동 사업에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2006.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된 시점부터 계산

* '24년도 사업은 '14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4년 (사업시행연도) - '17년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년 ☞ 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1」 '학력 및 교육'에 따라 최종학력 및 교육 이수실적 등 차등 평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신청제외]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측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 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진뿔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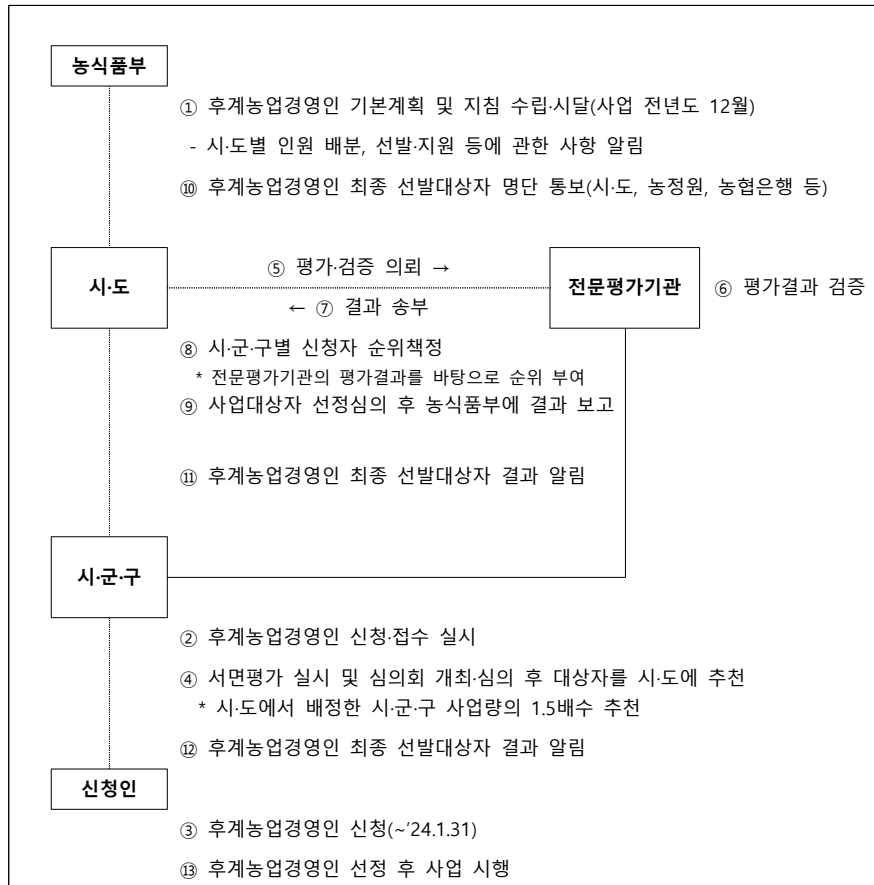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2. 선발 절차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 (23.12.26~24.1.31) → ③ 시·군·구(심의회)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2.16) → ④ 시·도 : 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2.23)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 결과 검증(2.26~3.8) → ⑥ 시·도 :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검증 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3.8~3.15) → ⑦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3.29)

< 사업대상자 선발 절차 >



3.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 (특광역시 포함) 및 농정원 등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 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

-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 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신청인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사업을 신청
 -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 승계 인정기준
 -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위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신청·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 기관 선정, 사업참여 홍보 등 사업추진 철저

4.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대상자 자료의 자격요건 및 조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평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후계농업 경영인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천
 -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 : 편입예정연도의 인원 배정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시·도(특광역시 포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
 - * 평가검증 의뢰 시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 후 평가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검증 결과를 해당 시·도에 제출

* 필요시 시·도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평가·검증 결과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관련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시·도(특광역시 포함)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는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

①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대상자(포기, 취소 등 포함)인 경우는 제외

② '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③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 그 외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 만 40세 미만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최종 선발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에 보고

Ⅲ.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대출규모 : 8,000억원(연)

- 지원인원 : 6,100명(후계농업경영인 1,000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5,000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100여명)

- (후계농업경영인)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하고 시·도별 사업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인원 >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1	98	41	44	81	121	113	150	87	34	8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3, 대구4, 인천10, 광주4, 대전3, 울산3, 세종3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24년 5천명 별도 선발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24년 교육 수료생 자금 지원

* 수료생 명단은 농식품부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별도 통보

○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20년 선정자 '24.12.31까지,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23년 선정자 '27.12.31, '24년 선정자 '28.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4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단,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또는 선정 후에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없다면 정책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음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예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 금액 = 5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정책자금의 대출금액(농업창업분야)

- 정부 가용예산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자금 신청 가능

- 정책자금 용자 제외 대상 사업 및 대상자, 자금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진행 필요

○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용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경종분야**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 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기타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농기계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택승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입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시설 설치 및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 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농기계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택승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기존 선정된 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2.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 경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 '18년부터는 후계농 경영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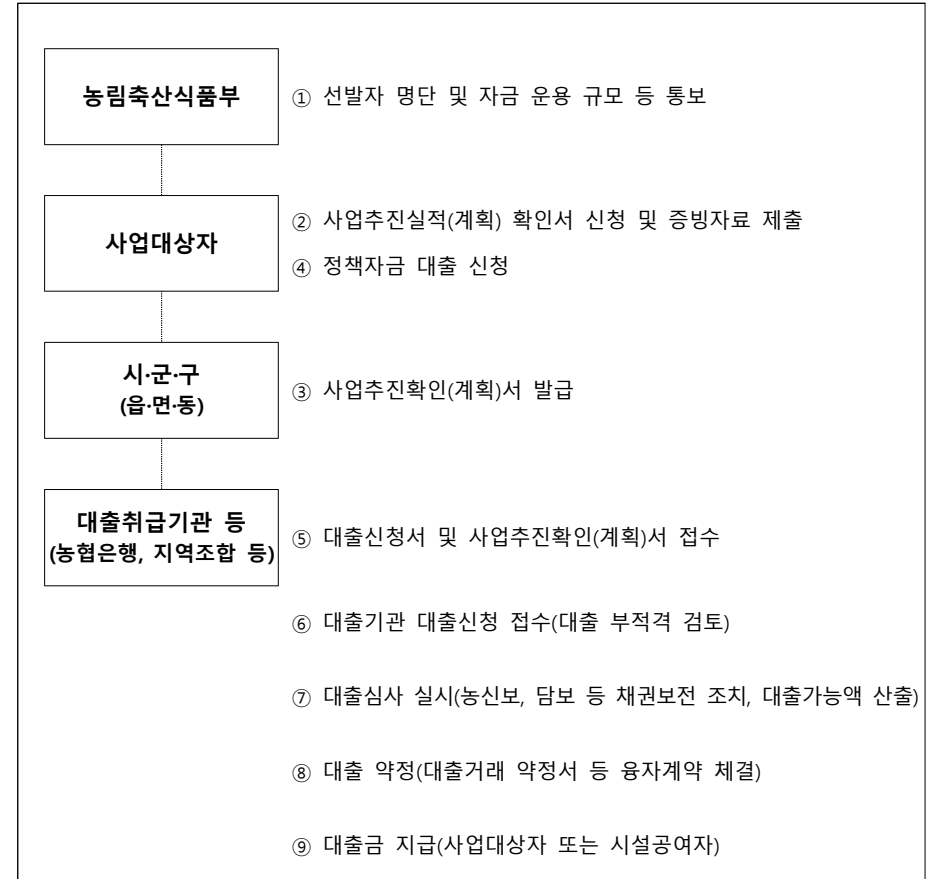
3.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 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 * 관련 지원 사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가능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 시행)
 -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을 따름
 -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IV.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1. 용자 실행 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용자 실행 주요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선발된 사업대상자 명단, 자금 규모 등을 시·도와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

사업대상자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 대출이 2개월 내에 실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을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 지원 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 완료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 완료 후 대출(기성률 대출 포함)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 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축사신축 등 상당 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 증빙서류를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가능

** 제출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대출신청자료(별지 13호 서식)

-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 소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제출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 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대출신청자료(별지 13호 서식) 등

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계획확인서(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사업 완료 후)」를 발급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경영 교육 수료증'을 통한 교육 수료 여부 등을 확인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지원

*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의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관련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55조, 제58조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근거

○ 후계농업경영인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시행

-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가능(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확인)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반드시 지급

※ 사업 완료 전 대출 시 유의사항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인 경우,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이 동시이행이 가능하다고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된다면 세부사업별 대출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이에 해당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 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 등을 징구하고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는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 (14일 이내)

- 사업 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 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용자 대출실행 결과 등을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용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구)에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을 통하여 상시제공

* 정책자금 용자 지원에 관련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

○ 자금 한도 운용에 따라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 조합에서 수행 가능

* 경종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

- 용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에서 수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 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 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 단, '18년부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는 농신보 보증비율을 95%로 확대('18년 농신보 보증 규정 개정 시점부터 적용)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 제한 대상

○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운영

2. 용자 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매매 또는 임차)
 -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 거래일 경우에는 대출 가능*
- * 위 내용(상속)과 관련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의뢰 등을 거쳐 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 사업이 완료된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용자(용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 단, 용자가 없는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대출 가능
 - * 다만,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농신보 보증 미승인 등으로 인한 용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농신보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지분인 경우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

V. 사후관리 및 이행점검

1. 기관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실태 조사·분석 실시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서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 겸직·겸업 및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대출취급기관 정책자금 점검 실시(분기별)
 - *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

시·군·구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별지 제11호 서식) 실시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Agrix 활용)하고,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작성 지도

-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별지 제7호 서식) 등 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 판단
 - 사업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회수 조치 통보
 - * 그 밖에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다만, 작목 및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된다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 2)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 3) 도시 이주·이탈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4)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 단,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① 농업법인의 근로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최대 5년 이내, 매년 1회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②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에 해당 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④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⑤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 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농외근로 가능 사업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취업 및 6)사업자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름

8)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 단, 본인명의로 영농기반이 있는 자(승계농, 기존 농업인 등)로서 자금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유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이 종료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대출 미실행자에 대한 조사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취소 여부 결정

9)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① 대출 실행한 사업대상자 : 최초의 자금 대출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②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취소

10)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회수 사유

○ 「2.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이와 같은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융자 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기관에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국가 및 지자체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

- 다만, 해당 건 관련 상환된 자금과 동일한 지원분야 및 세부 지원 대상, 상환규모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 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자가 편입하지 못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 입영하게 된 경우

- 복무 이후 다시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계농업 경영인 자격은 유지 가능

* 향후 지원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여 지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 기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복무중인 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우선 적용

VI. 기타 행정사항

- 성과지표 측정(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교육, 평가 및 홍보 등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급
 -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발결과를 Agrix에 등록(선정 후 1개월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축협 등과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시 보고

- 사업장소 등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사업내용(계획서)을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 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의 승계
 -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중에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
 -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교육포털에서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지도

〈 부 록 〉

- ②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③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용자금 회수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2·3호 서식 또는 「농업경영장부시스템 (<http://agrion.kr>)」으로 경영장부와 경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수강은 가능

1. <별지 제1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 경영장부
 3. <별지 제3호서식> 경영일지
 4. <별지 제4호서식> 사업성 검토서
 5. <별지 제5호서식> 사전신용조사서
 6. <별지 제6호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7. <별지 제7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8.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9. <별지 제9호서식> 영농승계확인서
 10. <별지 제10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11. <별지 제11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카드
 12. <별지 제12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취업 확인서
 13. <별지 제13호서식> 대출신청자료
 14. <별지 제14호서식> 후계농업경영인 농외활동 신청(승인)서
-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개인정보 위탁· 제3자 제공 동의	<p>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p> <p>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p> <p>나. 이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p>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p> <p>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 완료까지 (최대 25년)</p> <p>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p>	<p>동의 <input type="checkbox"/></p> <p>비동의 <input type="checkbox"/></p>
	<p><비영리 농업인 단체></p> <p>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한농연 등)</p> <p>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p> <p>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p> <p>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 완료까지 (최대 25년)</p> <p>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p>	<p>동의 <input type="checkbox"/></p> <p>비동의 <input type="checkbox"/></p>

제출자료	제출체크
1. (필수)사업계획서 1부.	<input type="checkbox"/>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input type="checkbox"/>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input type="checkbox"/>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6.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input type="checkbox"/>
7.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input type="checkbox"/>
8.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input type="checkbox"/>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input type="checkbox"/>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input type="checkbox"/>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input type="checkbox"/>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input type="checkbox"/>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사 업 계 획 서

I.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기 재 생 략	
		실제 거주지	마을 이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 련 번 호	농지소재지				지 목	경영 형태 (자경· 임차)	농지면적(m ²)				재배 품목	재배면적 (m ²)		실제 수확 면적 (m ²)	수 탁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			공 부 상	실 제 관 리	미 이 용	휴 경		폐 경	노 지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m ²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 련 번 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수 탁)	축사 면적(m ²)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kl)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돼지	양돈 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종돈 업				산란계			천개	천개
					육용계			천수	천수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면양	()
기타 가축		꿀벌(군)	()
		토끼	()
		사슴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별첨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8.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용자금 (천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목	인증번호

* 인증서 사본 별첨

II. 사업계획

1. 사업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천 원)				
				계	후계농 용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 3ha, 젓소 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산물			
	부산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제료비			
	소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건비			
	수리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소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괄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 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대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3호 서식]

경 영 일 지

< 00 월 >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기재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 []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후계농 교육수료일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대출금	자부담	보조금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500평 100두 1,000평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총계		250,000천원	250,000천원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A)		사업추진실적(B)		실행률 (C=B/A)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 100,000천원 -		60% 100%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신청내역	기 대출액(D)		금차 대출 신청액(E)		대출 총계(F=D+E)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100,000천원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60,000천원 100,000천원 -
기재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_____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출취급기관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지 제7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확인서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사업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 1. 주 소 :
- 2. 성 명 :
- 3. 생년월일 :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 사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영농승계 확인서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별표 1]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항>
 1. 본 서면평가표는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서면평가자」는 '평가지침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평가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시 본 서면평가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농품목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축산 <input type="checkbox"/> 특용작물 <input type="checkbox"/> 복합(축산+경종)				
농축산업분야 전공여부	<input type="checkbox"/> 전공 <input type="checkbox"/> 비전공				
학 력	<input type="checkbox"/> 고졸이하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졸업예정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졸(졸업예정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여(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병 역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영농승계 여 부	<input type="checkbox"/> 승계 <input type="checkbox"/> 비승계 * 승계의 경우 관련 증빙 등 사실 확인 필요				
배우자 후계농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신청연도 부부 동시 신청의 경우도 포함				

※ 농축산 전공 : 농고 및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혹은 일반대학의 농축산관련 전공(학과)자를 의미함

■ 자격요건 등 확인사항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등록	부적합/미등록
① 후계농 신청품목 적합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부품목 :)	<input type="checkbox"/>
② 영농경력 적합여부	<input type="checkbox"/> (영농경력 : 년)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실적 적합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실적 : 시간)	<input type="checkbox"/>
④ 후계농 자격취소 사실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취소일 :)
⑤ 사업장등록 및 직장보유 유무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직장명 :) * 직장 보유 적합의 경우 사업장직장명 명시	<input type="checkbox"/>
⑥ 농지원부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세대구분 : ()단독세대 / ()공동세대(부모)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 계획 구체 성 (25)	품목 선정 (5)	1.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적정 (5) <input type="checkbox"/>	미흡 (3)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0) <input type="checkbox"/>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적정 (5) <input type="checkbox"/>	미흡 (3)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0) <input type="checkbox"/>	
	영농 규모 (5)	3. 영농규모는 어떠한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농방법을 고려할 때 영농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참조(농식품부 홈페이지 자료실 열람가능))	구간평균 초과 (5) <input type="checkbox"/>	구간평균 (평균치 ±10%) (3) <input type="checkbox"/>	구간평균 미만 (0) <input type="checkbox"/>	
	생산 계획 (5)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적정 (5) <input type="checkbox"/>	미흡 (3)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0) <input type="checkbox"/>	
	판매 계획 (5)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적정 (5) <input type="checkbox"/>	미흡 (3)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0)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 실현 가능 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6.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용자, 자재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적정 (5) <input type="checkbox"/>	미흡 (3)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0) <input type="checkbox"/>	
	경영 전문화 의지 (5)	7.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있음 (5) <input type="checkbox"/>		없음 (0) <input type="checkbox"/>	
학력 및 교육 (10)	최종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10)	8-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_____ 학 과 및 전공: _____	농업계 (10) <input type="checkbox"/>	비농업계 (0) <input type="checkbox"/>		
		8-2. 최근 3년(2021.1.1~2023.12.31)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input type="checkbox"/>	70 ~99 (7) <input type="checkbox"/>	40 ~69 (5) <input type="checkbox"/>	20 ~39 (3)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021.1.1~2023.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 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